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담 당 관)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 간 : 2019. 4. 22. ~ 4. 26. (5일간)
- 대상기관 : 농업기술센터
- 감 사 반 : 기획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범위 : 2016. 6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보조사업의 지도·점검 적정여부
 - 각종 수당 등 예산 집행 실태
 - 각종 소관업무 현장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22건
 - 행정상 조치 : 22건 (주의 13건, 시정 6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5건 4,962,780원 / 매입 1건 30,0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 만족도 향상
 - 관심 작목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교육기법 활용
 - 샤인머스켓반, 농업기계 교육 신규 편성으로 교육대상 확대
 - 모든 과정에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 과수 신품종 보급 및 신소득 작목 발굴
 - 기후변화, 소비패턴 변화에 과수 신품종 보급 전략적 대응
 -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만감류 보급,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소득화 시범사업 계획)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총 22건 (농업지원과 18, 시험연구과 1, 공통 3)	주의 13 시정 6 개선 2 기관경고 1		회수 5건 4,962,780원 매입 1건 30,000원
1	농업지원과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비 소홀	개선		
2		◦ ○○○○○ △△연찬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개선		
3		◦ 일상감사 이행 소홀	주의		
4		◦ 환경보전비 등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664,200원
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부적정	시정		회수 3,091,000원
6		◦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29,500원
7		◦ 시설공사 유지관리(최종검사) 소홀	주의		
8		◦ 지출원 직무대리 지정 소홀	주의		
9		◦ 계약체결시 불필요한 서류요구 부적정	주의		
10		◦ 지역개발공채 매입 확인 소홀	시정		매입 30,000원
11		◦ 지출 결의서 서식 사용 부적정	주의		
12		◦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13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4		◦ 청백-e 개별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주의		
15		◦ 강사수당 지급시 원천(특별) 징수 의무 미이행	시정		회수 58,080원
16		◦ 귀농귀촌집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17		◦ 귀농 귀촌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주의		
18		◦ ★★★★★★★연합회 ○○○대회 추진 소홀	주의		
19	시험연구과	◦ 농가형 와이너리 시설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주의		
20	공통	◦ 행사실비보상금중 『일비』 지급 부적정	주의		
21		◦ 공용차량 사용 부적정	기관경고		
22		◦ 외부강의 등에 따른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주의		회수 20,000원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비 소홀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이며 자치조례의 경우 조례 제정 근간이 되는 법령을 조례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으며 언급하더라도 정확을 기해야 함에도 동 조례 제1조에서 명시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법령이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음.
- 한편, 동 조례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보다는 2015.1.20.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더 가깝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2 ~ 4.(생략)

- 그럼에도,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 중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조항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조속히 정비(삭제)되어야 하며, 추후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는 「지방재정법」 및 「영동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제14조에 따라 영동군 지방보조금심의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함.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상위법령에 맞게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영동군 지방보조금심의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 △△연찬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현장교육 및 연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의 핵심주체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단위 : 명, 천원)

구분	보조사업명 (행사명)	보조금액 (천원)	사업내용	장학금내역		지원근거	예산 과목
				인원	금액		
2016	○○○○○ △△연찬회	8,575	화합행사, 특 강,장기자랑, 우수회원 표 창등	1	200	영동군○○○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 경상 보조
2017		8,787		1	200		
2018		10,088		1	200		
합계		27,450		3	600		

- 위 표에서 보듯 매년 개최하는 ○○○○○ △△연찬회 사업내용으로 우수회원 표창, 회원화합행사 및 장기자랑, 특강, 우수회원 자녀 장학금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 대부분 보조사업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일반보상금(301-02)으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우수 ○○○○○ 자녀 장학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급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부담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임.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수 ○○○○○ 자녀 장학금 집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지급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부담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일상감사 이행 소홀

【현 황】

○ 일상감사 미 이행 물품구입 현황

품명	규격	계약일	납품기한 납품일	계약자	구입비 (천원)	비고
유개트럭	유개트럭 포터 II	17.04.26	17.09.23 17.05.12	충북지방조달청	22,048	조달수수료 포함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일상감사 대상 및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업무의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 2017.4.26. 충북지방조달청과 계약하여 완료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용 “유개트럭 구입” 시 일상감사 신청없이 구입하여 일상감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일상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업무추진을 하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664,2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환경보전비 등 정산 부적정

【현 황】

○ 정산 부적정 현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지급액(원)			비고
				당 초	변 경	정산액	
☆☆☆☆☆ ☆☆☆☆ ☆☆공사	18.04.23	18.04.30 ~ 18.08.27	(주)□□□□ △△△	356,088,200	354,424,000	1,664,200	

【위법부당사항】

○ 환경관리비란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을 합하여 산정하고 이를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서 시공사는 환경관리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

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별첨 2 참조)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목적 외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경우 금액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2018. 4. 23 (주)□□□□ △△△과 계약하여 준공한 「☆☆☆☆☆☆☆☆ ☆☆공사」 준공 시 “보험료 미납에 따른 금액 동의서” 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 항목을 누락한 채 계상하여 금액금액을 과소 산출하였고,
- 또한 환경보전비로 반영할 수 없는 현장 청소나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함 등에 사용한 비용을 정산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1,664,2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 ☆☆공사」에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과다지급한 1,664,2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환경관리비 정산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091,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부적정

【현 황】

○ 시설공사 제잡비율 초과 산출현황

사 업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도급액(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액	
★★★★★★ ★★★★ ★★★★ 공사	(주)■■■■ ○○○	18.06.**	18.06.** ~ 18.09.**	60,543	57,452	3,091	

【위법부당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법령 및 토목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산식은 도급자관급 미포함 시 $(재+직노) \times \text{요율}$ 로 적용하고, 도급자관급 포함 시 $a. (재+직노+도급자관급) \times \text{요율}$, $b. (재+직노) \times \text{요율} \times 1.2$ 중 적은 값을 제경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 18. 06. 11 (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 공사」 는 내역서상 도급자관급액이 반영

되지 않은 공사로서 도급자관급 미포함 시 산식 $[(\text{재}+\text{직노})\times 2.93=1,207,427\text{원}]$ 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도급자관급액 포함 시 산식 $[(\text{재}+\text{직노}+(\text{도급자}+\text{관급자})\text{관급액}/1.1)\times 2.93=3,636,263\text{원}]$ 으로 잘못 적용하였음에도 시정 없이 준공처리하여 3,091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 ★★★★★ 공사」에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91,000원을 즉시 회수하기 바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적정하게 적용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29,5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현 황】

○ 제경비 미정산 현황

사업명	사업량	보조액 (천원)	추진 기간	보조사업자 (도급업체)	도급액(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	
☆☆☆☆☆ ☆☆☆☆☆ ☆☆☆☆☆ ☆☆☆☆☆ ☆☆☆공사	◎◎ 181.34㎡	30,000	16.08.** ~ 16.10.**	▲▲▲▲▲ ▲▲▲ ((주)□□)	30,000,000	29,870,500	129,500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의하면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공사의 도급금액에 반영해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에 의거 소요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비용은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2016년 ▲▲▲▲▲▲▲▲▲▲(***)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 ☆☆☆☆☆☆☆☆☆☆☆☆☆☆☆공」에 대한 보조금 정산자료 확인 결과, 산출내역서에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18,870원)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액(16,308원), 환경보전비(69,890원)가 계상 되어 있음에도,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129,5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하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도급업체 (주)□□에게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과다 지급한 129,500원을 보조사업자를 통해 회수하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련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유지관리(최종검사) 소홀

【현 황】

○ 시설공사 따로검사 대상 현황

연번	공 사 명	도 급 자	도급액	준공일	하자보증기간		비 고
					시작일	종료일	
1	■■■■■■■■■■ ■■■■■■ 설치	-	14,000	2016.09.**	2016.10.**7	2018.10.**	
2	▲▲▲▲▲▲▲▲▲▲▲▲공사	-	4,700	2017.06.**	2017.06.**	2018.06.**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 ■■■■ 설치」외 1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원 직무대리 지정 소홀

【현 황】

○ 직무대리 미지정 내역

기간	구분	기존		직무대리		사유	비고
		직	성명	직	성명		
2017-05-28 18:00 ~ 2017-06-02 20:00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팀장	-	미지정		관외출장 (교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팀장	-	미지정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으로 제1관서에 해당하며 지출원은 지도기획팀장임.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고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 소장은 문서로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7. 5. 31.일에 지출원이 관외출장으로 부재중임에도 지출원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을 통해 “■■■■■■■■■■ 지급” 외 40건을 e-호조 지출을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출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시 반드시 문서로써 직무대리를 지정하고, 지출원 직무대리 지정없이 e-호조상 지출원 변경 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재무회계규칙 및 직무대리 규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계약체결시 불필요한 서류요구 부적정

【위법부당사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개인 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인 납세증명, 각종 등록필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물품구입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수령 및 지불사무 처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처리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국세·지방세 증명서를 제출 받아 첨부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각종 계약 체결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서를 제출받아 전자적으로 확인·처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매입 3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공채 매입 확인 소홀

【현 황】

○ 물품 구입 현황

(단위: 원)

예산과목		지급일	적 요	채권자	지급액			지역개발공채		
사업명	통계목				공급가액	세액	계	매입금액(A)	적정매입금액(B)	차액(C)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자산및 물품취 득비	2017- 10-**	○○○○○ 구입	-	13,680,000	1,368,000	15,048,000	340,000	200,000	과다 140,000
친환경 농업	자산및 물품취 득비	2017- 11-**	★★★★★ 구입	-	2,286,364	228,636	2,515,000	0	30,000	과소 30,000

【위법부당사항】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고,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을 [별표1]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약자의 대금 청구시 공채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7조)	
※ 지역개발공채 (총계약금액 2백만원 이상)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공사도급용역계약 : 공급가액의 2.5/100 - 물품구매,수리제조 : 공급가액의 1.5/100 (10,000원 미만 절사)

※ 채권매입 면제대상 :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의 구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7. 10. **.일 ○○○○○를 (주) ◇◇◇◇로부터 구입하면서 계약 상대방이 과잉 매입한 매입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2017. 11. **.일 ★★★★★구입시 ▲▲▲▲(주)로부터 30천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기 바라며,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시 계약자가 매입 비율에 맞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는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 결의서 서식 사용 부적정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119조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37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34호서식)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품 구입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미사용함에 따라 별지 제37호 서식(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범위 기간중 대부분의 물품 구입에 있어 별지 제34호서식(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등 지출결의 서식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물품구입시 계약의 내용과 일반지출·신용카드 지출을 구분하여 지출결의서 서식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현 황】

카드번호	포인트 적립현황(점)	세입조치 여 부	비고
9430-*****-*****-****	31,705	부	2019.1.28기준
9430-*****-*****-****			
9430-*****-*****-****			
9430-*****-*****-****			
5585-*****-*****-****			
5585-*****-*****-****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 【현황】에서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발생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2017. 5. 31. 일 27,290원을 세입조치한 이후로 적립된 포인트 31,705점을 세

입조치 했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31,700(원 단위 절사)원이 소멸되지 않도록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없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식대 지출 및 특산물 구입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모금행사 납부, 학생근로자 상품권 지급 및 축하케익 전달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집행하는 등 총 33건에 대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관련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해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청백-e 개별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현 황】

○ 청백-e 개별 상시 모니터링 처리실적

대상업무	감사자 추출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적기처리 건수	적기 처리율	적기승인 건수	적기 승인율	미승인 건수	비고
지방재정	89	89	100%	80	89.9%	49	55.1%	1	

【위법부당사항】

-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매일 확인하고 적기에 조치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청백-e 개별 상시 모니터링 내역을 기한이 지나 처리하거나 승인을 받고 있으며, 현재 1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공직비리 사전예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청백-e 개별 상시 모니터링을 적기에 처리·승인을 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8,08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강사수당 지급시 원천(특별) 징수 의무 미이행

【현 황】

○ 강사수당 원천징수 미징수 현황

[단위 : 원]

지급일	프로그램명 (강사명)	기 간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실지급액	공제세액
2017. 4.**	★★★★★	2017. 4.** 2017. 4.**	440,000	0	0	440,000	19,360
	○○○						
2017. 9.**	□□□□□ (1차)(2차)	2017. 9.** 2017. 9.**	440,000	0	0	440,000	19,360
	▲▲▲						
2017. 9.**	□□□□□ (3차)(4차)	2017. 9.** 2017. 9.**	440,000	0	0	440,000	19,360
	▲▲▲						

【위법부당사항】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하며(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3%,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0%), 지방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타소득(일시적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의 필요경비율

기간	필요경비율	원천징수 세율	과세최저한
~ 2018. 3월까지	80%	4.4%	250,000원
2018. 4월 ~ 12월	70%	6.6%	166,667원
2019년 이후	60%	8.8%	125,000원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현황에서와 같이 각 프로그램 사업에 따른 강사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 프로그램 강사 ○○○○과 ■■■■ ■■■ 프로그램 강사 ▲▲▲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58,080원을 원천(특별) 징수하기 바라며, 각종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특별)징수 관련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귀농귀촌집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현 황】

○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샘플조사 재산정 현황

연번	성명	주소	귀농 인원수	전입일	당초 산정결과			내용	재산정결과		
					총점	순위	선정 결과		총점	선정 결과	사유
1	▲▲▲	**면	1	2015.08.28	10	31	선정	- 2015. 8. 28. 대전에서 전입 하여 단독세대 구성	4	대상 제외	1인 거주 단독세대로 제외대상
2	□□□	**면	4	2015.05.15	16	15	선정	2016. 4.21. 재 전입하면서 기 존 세대의 세대 원으로 전입	16	대상 제외	2인 이상 전입 세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세대에 전입 하여 제외대상
3	○○○○	**면	1	2015.02.17	16	9	선정	2015. 2.17. 전 입	2	대상 제외	전 입 자 1 명 으 로 제외대상
4	☆☆☆	**면	2	2016.09.05	8	예비	미선정		8	대상	전입자 2명
5	■□■	**면	4	2013.08.05	18	제외	미선정	저온저장고 보 조사업 대상자 로 제외	18	대상	전입자 4명

※ 전입일 및 가족 수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일 기준

【위법부당사항】

- 귀농·귀촌인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상호 소통강화로 안정적 마을 정착을 유도하고자 2012. 1. 1.이후 전입 한 귀농귀촌 세대(2인 이상 가족이 상시 거주하는 세대)에 가구당 500천원 한도로 귀농·귀촌가의 마을 입주 후 마을주민 초청 집들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2. 1. 1.이후 영동군으로 전입하여 2인 이상 가족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 세대주가 지원대상이며, 1인 거주 단독세대 및 단순집들이 행사를 하는 귀농·귀촌가(마을전체 주민이 아닌 친인척 초청 등 가족중심행사)의 경우 제외대상으로 사업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이주가족수와 전입일 등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17년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현황과 같이 샘플 조사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심사표 기준과 다르게 1인 단독 전입가구, 기존세대 전입가구, 전입인원 1명인 가구 등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다른 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외조건에 없음에도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지원대상이라 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심사표기준에 맞게 자격요건을 심의하여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귀농 귀촌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현 황】

○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후관리 현황

사업명	연도별	대상자수	관리카드 비치현황	실태조사현황		비고
				실시여부	실시일(공문시행)	
	계	44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016	17	여	부	-	
	2017	20	여	부	-	
	2018	13	여	여	2018.05.18.	
농가 주택 수리 비 지원 사업	2016	28	부	부	-	
	2017	41	부	부	-	
	2018	26	부	여	2018.05.18.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2016	31	부	부	-	
	2017	21	부	부	-	
	2018	25	부	부	-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	2016	15	부	부	-	
	2017	13	부	부	-	
	2018	13	부	부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2016	11	부	부	-	
	2017	12	부	부	-	
	2018	14	부	부	-	
주택 신축 (설계) 지원 사업	2016	2	부	부	-	
	2017	5	부	부	-	
	2018	4	부	부	-	
귀농인 소득증대 지원 사업	2016	23	부	부	-	
	2017	23	부	부	-	
	2018	19	부	부	-	
귀농인 생산 농산물 상품성 강화 지원사업	2018	65	부	부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귀농·귀촌인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귀농인이란 영동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조에 따르면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대상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제9조에 따르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외 7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귀농·귀촌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후 사업장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5년 이내에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지원대상자 441여명에 대하여 관리카드 비치 및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이 있으며,

- 보조금 회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조금 회수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 하는 등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에는 금액에 대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

가. 회수액 = 지원금액 × 잔여기간 / 60

나. 잔여기간 = 60개월 - 경과기간 월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외 7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연합회 ○○○대회 추진 소홀

【현 황】

○ ★★★★★★★연합회 ○○○대회 보조금 집행현황

집행일자	집행내역	수량	집행금액	비고
합계			25,000,050	
10.31.	음료 등	1식	65,000	
10.31.	고무신	30켤레	135,000	
11.10.	기념품, 스티커	1식	400,000	
11.10.	임대료(버스)	9대	1,800,000	
11.14.	임대료(텐트 등)	1식	2,150,000	
11.15.	단체복(티셔츠)	30벌	870,000	전체보조금액의 83.3%
11.15.	단체복(조끼)	557벌	19,495,000	
11.22.	종이용기	1식	12,050	
11.27.	피자체험비	16	64,000	
12. 4.	머핀팬 등	1식	9,000	

※ 개최 : 2017.11. **. / 참석인원 : 1,100명(영동군 600명 참석)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금액 등을 포함한 교부신청서와 사업의 개요,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경비의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합회 ○○○대회는 농업·농촌의 핵심 농촌여성지도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고 회원 간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영동군★★★★★회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문화 적응으로 안정적인 농촌가족을 육성하고자 지원되는 보조 100%(25,000천원)의 사업임.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자인 ★★★★★★★★ ★★★★★(회장 △△△)에서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의 버스임대료, 단체복, 축하공연준비, 텐트·탁자·의자 임대 등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결정을 하여 사업비 25,000천원 중 전체 사업비의 83.3%인 20,365천원이 단체복 구입에 사용되는 등 보조금 집행내역이 사업계획 상의 기대효과를 얻기 어려움에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보아 정산검사를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적정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농가형 와이너리 시설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현 황】

○ 농가형 와이너리 시설 보조사업 대상자 면허취득 사후관리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지 원 대상자	보조사업 현황		주류제조 면허취득 대장 작성내용 (면허취득 여/부)	비고
		사업연도	총사업비		
계			269,648		
2016	-	2015	20,688	부	
2016	-	2015	20,331	부	
2016	-	2016	21,044	부	
2016	-	2016	20,083	부	
2016	-	2016	20,083	부	
2016	-	2016	20,013	부	
2016	-	2016	20,017	부	
2017	-	2017	19,199	공란	
2017	-	2017	22,000	공란	
2017	-	2017	22,000	공란	
2018	-	2018	21,500	공란	
2018	-	2018	21,450	공란	
2018	-	2018	21,240	공란	

【위법부당사항】

- 농가형 와인 제조설비 지원사업은 전국 제일의 포도 주산지로서 와이너리를 육성하여 포도·와인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농가형 와이너리를 구축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및 체험관광 상품화 증대를 위하여 일정 규모별, 품종별 과수 재배농가의 와인제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류제조면허 취득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 와인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관내 거주 및 제조장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단체에 농가형 와인 제조설비 지원(신규지원)을 하는 보조 60%(12,000천원), 자담 40%(8,000천원)의 보조사업이며,
- 신규 와이너리 조성을 위하여 주류제조 취득 가능 농가, 주류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는 제조장 보유자를 우선 선정하고 차선으로 신규 와이너리 제조설비 지원 농가 신청 부족 시 주류면허농가 중 와인생산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형 와인 제조설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않을 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2015년부터 적용)하여 보조지원 된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사후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에서와 같이 농가형 와인 제조설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조지원시설의 목적 외 이용 여부 및 신규농가의 주류제조면허 취득여부, 기존 와이너리 농가의 주류제조면허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보조지원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현황만 확인·작성하고 주류제조면허 취득 및 유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작성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형 와인 제조설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시설의 목적 외 이용여부, 신규농가의 주류제조면허 취득여부 및 기존 와이너리 농가의 주류제조면허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행사실비보상금중 『일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사항】

- 2016년 ~ 2017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301-09)중 “급량비” 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교통비” 및 “숙박비” 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민간인에게 “일비(日費)” 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8년 부터는 “일비(日費)” 를 지급하지 않고 자체 시정하여 개선하였으나, 과거 감사범위인 2016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88회, 2017년도에는 124회 등 총 212회에 걸쳐 “일비(日費)” 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금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용차량 사용 부적정

【현 황】

○ 차량사용 현황

차량배차신청									차량운행일지	
사용일시	차량번호	기안자	결재자	사용자	운전자	행선지	동승자	용무	기안자	결재자
2017-02-**(토) 09:00 ~ 16:00	-	△△△	■□■	△△△	△△△	청주	6명	직원 결혼식 참석	△△△	■□■
2017-05-**(월) 18:00 ~ 24:00	-	○○○	■□■	○○○	○○○	청주	0명	직원 경조사 참석	○○○	■□■
2017-11-**(수) 18:00 ~ 24:00	-	☆☆☆	■□■	☆☆☆	☆☆☆	영동, 금산	10명	직원장모상 문상	☆☆☆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집중 관리부서는 직속기관은 주무담당부서(농업지원과)이며, 제18조에 따라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아울러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부동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7. 2. **. (토)에 직원 결혼식 참석 명목으로 △△△ 외 6명이 공용차량을 사적 사용하였고, 2017. 5. **. (월)에 ○○○는 직원 경조사 참석 명목으로 근무시간 외 공용차량을 사적사용하였고, 2017. 11. **. (수)에는 직원 장모상 문상 명목으로 ☆☆☆ 외 10명이 근무시간 외 공용차량을 사적사용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공용차량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 『영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 기관경고 처분을 합니다.
- 기관경고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시 엄중문책할 예정이니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2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외부강의 등에 따른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현 황】

○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

연번	직급	성명	유형	내역	요청자	일시	여비	비고
1	농촌 지도사	□□□	강의	▲▲▲▲ 출강	-	2017. 4.19.	20,000	출장
2		★☆☆	강의	◆◆◆◆ 교육	-	2016. 8.23.	-	출장
3			강의	◆◆◆◆ 교육		2017. 5.31.	-	출장
4			강의	◆◆◆◆ 교육		2017. 9. 5.	-	출장
5			강의	◆◆◆◆ 교육		2018. 3. 6.	-	출장
6			강의	◆◆◆◆ 교육		2018. 3.27.	-	출장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은 영동군 소속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군 소속공무원(직속기관·사업소·읍·면 공무원을 포함한다), 청원경찰, 파견 중인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되며,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동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1시간당 40만원 한도, *별표2 참고)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군수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상사의 지시를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요청받지 않은 외부강의를 소속직원이 출장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 ■■■■의 경우 @@@@ @@@@의 요청으로 ▲▲▲▲에 출장(2017. 4.19.)하면서 출장으로 처리하여 1회, 20,000원의 여비를 수령하였고, 농촌지도사 ★★의 경우 ○○○○○ ○○○○○○에서 요청한 ‘◆◆◆◆ 교육’에 총5

회(2016. 8.23./2017. 5.31./2017. 9. 5./2018. 3. 6./2018. 3.27.)에 걸쳐 출강하면서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출강일이 근무시간 중임에도 공무이외의 업무로 출장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따라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군수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아울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원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외부강사 사례금을 지급하고, 소속직원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로 영농교육을 위해 출강하여 외부강사 사례금을 수령하는 등 지나친 외부강의 등의 출장으로 당면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우려가 있음에도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출장 시 외부강의 등의 시기 및 요청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부강의 사전신고 없이 출장으로 처리하여 부적정하게 수령한 여비 20,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앞으로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